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51호(號) 1934(昭和 9)년 7월 12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65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6호(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 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7월 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7월 1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4절(節) 승차권(乘車券)의 효력(效力) 중(中) 제24조(條)의 앞(前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제23조(條)의2 아래[左]의 경우에는 여객(旅客: 정기[定期] 및 회수[回數] 승차권[乘車券] 소지객[所持客]을 제[除]함)은 별도(別途)로 여객운임(旅客運賃)을 지불(支拂)하지 아니하고서도 하기(下記) 역(驛) 경유(經由) 승차(乘車)하는 것을 득(得)함.

경부선(京釜線) 사상(沙上)보다 먼[以遠: 구포방면(舊浦方面)] 각역(各驛)과 동해남부선(東海南部線) 동래(東萊)보다 먼[以遠: 수영방면(水營方面)] 각역(各驛)과의 상호간(相互間) 발착(發着)할 때.

부 산 역(釜山驛)

경부선(京釜線) 노량진(鷺梁津)보다 먼[以遠: 영등포방면(永登浦方面)] 각역(各驛)과 경원선(京元線) 서빙고(西氷庫)보다 먼[以遠: 한강리방면(漢江里方面)] 각역(各驛)과의 상호간(相互間) 발착(發着)할 때.

경 성 역(京城驛)

경의본선(京義本線) 역포(力浦)보다 먼[以遠: 중화방면(中和方面)] 각역(各驛)과 평양(平壤) 탄광선(炭鑛線) 선교리(船橋里)보다 먼[以遠: 사동방면(寺洞方面)] 각역(各驛)과의 상호간(相互間) 발착(發着)할 때.

평 양 역(平壤驛)

제23조(條)의3 용산선내(龍山線內) 발착(發著) 또는 통과(通過)하는 여객(旅客)은 당인리역(唐人里驛)을 경유(經由)하는 열차(列車)에 승차(乘車)하는 경우는 당인리역(唐人里驛)에 도중(途中) 하차(下車)를 하지 아니하는 한(限) 별도(別途)로 운임(運賃)을 지불(支拂)하지 아니하고 그 모두 승차(乘車)하는 것을 득(得)함.

제23조(條)의4 전조(前條)의 경우에 있어서 여객(旅客)이 당인리역(唐人里驛)에 하차(下車)했을 때는 아래[左]에 의(依)해 이것을 취급(取扱)하고, 이것에 대(對)해서는 제126조(條)의 할증금(割增金)을 수수(收受)하지 아니함.

1 제45조(條)의 특정운임(特定運賃)에 의(依)해 발매(發賣)한 승차권(乘車券)인 때는 이것을 회수(回收)함.

2 전호(前號) 이외(以外)의 승차권(乘車券)인 때는 별도(別途)로 서강(西江), 당인리역(唐人里驛)의 여객운임(旅客運賃)을 수수(收受)함.

제24조(條) 중(中) 「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」을 「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, 회유승차권(回遊乘車券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학생정기승차권(學生定期乘車券)인 때는 제126조(條)의 무례여객(無禮旅客)의 취급(取扱)을 함.

제34조(條) 중(中) 「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 및 회유승차권(回遊乘車券)」을 「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, 회유승차권(回遊乘車券) 또는 회수승차권(回數乘車券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76조(條) 중(中) 「왕복(往復)」을 「왕복(往復) 또는 회유(回遊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35조(條)2항(項) 중(中) 「상급여객운임(上級旅客運賃)」을 「상급보통여객운임(上級普通旅客運賃)」으로, 「하급여객운임(下級旅客運賃)」을 「하급보통여객운임(下級普通旅客運賃)」으로 개정(改正)함.